

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

제 94 회 사 천 시 의 회 임 시 회
제1차산업건설위원회(2005. 3. 24)

1. 심사 경과

- 가. 2005. 3. 17 : 사천시시장제출
- 나. 2005. 3. 18 : 산업건설위원회 회부(의안번호 제16호)
- 다. 2005. 3. 24 : 제9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(방재담당 최 일)

가. 제안 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자연·인적·기반재난에 대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·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내용

- 1)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
- 2)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설치·운영기간을 규정함

가) 구성

- 본부장 : 시장
 - 차 장 : 부시장
 - 통제관 : 본청의 국장·담당관(단장 포함), 직속기관의 소
- 장
- 담당관 : 부서의 과장(사업소장 포함)또는 본부장이 임명하는 직원

나) 설치·운영기간

- 자연재난대책기간
 - 매년 5월 15일부터 당해연도 10월 15일까지

-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
- 인적재난대책기간
 -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
- 기반재난중점대응기간
 - 매년 4월 1일부터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
-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
- 3) 재난단계별 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정함
- 4) 재난유형별 실무반 편성운영과 인력 및 장비동원 근거 마련

다. 관계 법령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규정, 국가기반보호관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관리 규정

3. 검토 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태주)

-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의 「재난관리법」이 폐지되고 「자연재해대책법」의 내용 중 중앙재해대책본부의 운영, 지방재해대책본부의 조직·방재계획·응급대책 등을 흡수·통합하여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이 2004. 3. 11 법률 제7188호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·운영 및 상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제정한 것임.
-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조례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여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바 본 조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 - 본 조례안 제4조제3항, 제4항, 제5항의 본문중 “대책본부의” 라는 표기가 계속해서 중복되는 바 이는 삭제하고
 - 본 조례안 제9조제4항 중에서 “.....제1항의 규정에 의한”의 제1항은 자연·인적재난만 해당되므로 제2항의 기반재난의 경우 관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“...제1항의 규

정에 의한..” 을 “...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...” 으로 수정하여 기반재난의 경우에도 파견 요청 할 수 있도록 하며

- 안 제16조의 “...중앙재해대책본부...” 를 “중앙 및 도 재해대책본부..” 로 하고 “....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를 ”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및 사천지구협의회... “로 수정하여 관련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됨
 - 안 제25조제1호의 “보고 또는 통보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” 을 “시기별 보고 또는 통보내용” 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(본 수정사항은 수정안 조문 대비표를 참고)
-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의 체계 및 구성, 용어의 사용 등 제 규정에 맞게 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점 없음.

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위원	질의요지	답변자	답변요지
진삼성 의원	■ 조례로서 지정된 재난대책본부 설치·운영기간이 아닌 시기에 각종재난 발생했을 경우의 재난 대응 대책은?	방재담당 최 일	■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재난대책본부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음

5. 토론 요지 : 없음

6. 심사 결과 : 수정 가결(수정안 별첨)

7. 소수 의견 : 없음